의 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. 9. 11. 대전광역시장

2. 건 명: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

3. 안건요지 : 따 로 붙 임

4. 검토의견 : 따 로 붙 임

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8년 10월 일

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환 구

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08년 9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9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 안이유

- 농업인 전문교육·농기계대여은행 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국제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 육성강화 및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
-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1987년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되고 부지가 협소하여 새로운 기술 실증시험포와 우량종자 증식 포장 및 농기계대여은행 확장이 곤란함에 따라
- 첨단 농업시설을 갖추고 질 좋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「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」으로 농업인 종합복지지원과 지역 농업 발전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
- 친환경농산물 및 소득작물 육성·보급을 통한 농업·농촌의 경제적 향상 및 농촌체험 학습의 장으로서 대전시민의 휴식과 교육 공간의 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 임.

2. 주요내용

(단위: m², 백만원)

| 사업명 | 위 치 | 규 모(면적) | | | 소요사업비 | |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|
| | | 토지 | 건물 | 기타 | 계 | 국비 | 시비 | 山上 |
|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 | 계 | - | 4,950 | 21,630 | 14,407 | 3,000 | 11,407 | |
| | 유성구 교촌동 568-1번지 일원 | - | 4,950 | 21,630 | 14,407 | 3,000 | 11,407 | |

3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유성구 교촌동 568-1번지 일원에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신축 이전하기 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구하려는 것으로,
- 유성구 교촌동에 신축예정인 농업기술센터 예정부지는 개발 제한구역으로 현재 양묘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, 부지면적 43,395 제곱미터에 건축면적 4,950 제곱미터 규모로 계획하였으며,
- 총 사업비는 144억 7백만원으로 재원마련은 현 청사 등 매각 대금과 균특회계로 충당할 예정임.
- 사업규모는 과학영농지원시설과 농업인 교육관, 농기계 대여 은행, 야외시설 등을 계획하였음.
-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는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농업인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전시 과학영농지원시설 확충과 농업인 교육공간 확보, 농가소득 증대와 도시민 휴식공간 제공 등의 효과가 기대되나,
- 이전 예정부지는 진잠로와 계룡 신도시를 연결하는 대로 2-22 호선인 폭 30 미터 도로가 농업기술센터 부지 중앙을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부지 단절에 따른 부지활용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,
- 진잠로에서 연결되는 주진입도로가 호남고속도로 하부를 통과 함에 따라 통로박스가 좁아 대형버스 운행이 불가능하여 대정동 에서 우회해야하는 불편이 있음.
- 본 동의안은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」 제13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나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농업기술센터)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,

-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사신축 이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.